

東北大学 한국인 유학생회 회칙

제1장 총 칙

제1조 정제 및 명칭

제1항 본 회의 정식명칭은 “東北大学 한국인 유학생회”로 규정한다.

제2항 본 회의는 일본 東北大学 내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치 모임이다.

제2조 목적

제1항 본 회의는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며, 원활한 학문 연구와 그와 관련된 교류를 증진시킨다.

제2항 본 회의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인 유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공존을 도모한다.

제3항 본 회의는 제1항과 제2항의 실현을 위해 그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한다.

제2장 회 원

제3조 회원의 정의

제1항 본 회의 정회원은 東北大学 및 대학 내 연구기관에 소속 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생, 교환학생, 교원, 연구원으로 규정한다.

제2항 그 외, 본 회의 일반 회원은 정회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,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본 회를 적극 지지하는 자로 규정한다.

제4조 회원의 권리

제1항 모든 회원은 본 회의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2항 정회원은 정기 총회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, 정기 총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.

제3항 정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 회의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5조 회원의 의무

제1항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정기 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
제2항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과 東北大学の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東北大学 한국인 유학생회 회칙

제6조 개인정보 보호

- 제1항 본회는 회원의 허가 없이 회칙 제2조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.
- 제2항 본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따르며, 이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3장 조직

제7조 구성과 역할

- 제1항 본회를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회장(1명), 부회장(각 캠퍼스 1명)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필요에 따라 여타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2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운영을 총괄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 또한 회장은 부회장과 여타의 운영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.
- 제3항 부회장은 東北大学の 각 캠퍼스를 대표·담당하며,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. 또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항 회장의 임기는 1년(4월 1일부터 3월 31일)이며 경우에 따라 재임(1회)이 가능하다.
- 제5항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의 임명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.

제4장 총회

제8조 시기와 내용

- 제1항 본회는 정기 총회를 매년 1회(3월) 개최한다.
- 제2항 정기 총회 시 운영위원회는 해당연도의 행사 결과, 회계 등의 활동을 보고한다.
- 제3항 정기 총회 시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.
- 제4항 정기 총회의 회의 내용은 7일 이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- 제5항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회원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,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, 회의 당일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한다.

東北大学 한국인 유학생회 회칙

제9조 선거

- 제1항 차기 회장은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,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인정된다.
- 제2항 지정된 투표 용지를 통해 투표가 진행되며, 선거관리 위원회가 개표한다.
- 제3항 회장 선거에 대한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 회의 정회원에 한한다.
- 제4항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, 부회장 중 1명이 이 차기 회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, 복수의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,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.
- 제5항 제4항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, 해당연도 회장이 차기 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.
-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, 선거관리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, 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다.

제5장 회칙 개정

제10조 조건과 효력

- 제1항 본 회칙은 운영위원이 모두 출석한 정기 총회에 한하여, 정회원 출석자의 2/3 이상이 개정안에 동의하였을 경우 개정된다.
- 제2항 개정된 회칙은 개정 당일 공포되며, 그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.

제6장 부 칙

제11조 본 회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, 그 외의 미비한 점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.

제13조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효력은 제정 및 개정 연도에 있어서 소급하지 않는다.

※ 본 회칙은 2012년도 東北大学 한국인 유학생회가 2012년 11월 18일에 작성하고, 2013년 3월 15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다.